

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1. 3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납골당의 명칭인 『효친관(孝親館)』이란 의미가 "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"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명칭을 『효친관(孝親館)』에서 "조상을 숭배하고 영혼이 안락하게 쉬어있는 곳"이란 뜻의 『송조당(崇祖堂)』으로 개정.
- 상위 법령인 "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"이 "장사등에관한법률"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설치 근거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.
- 납골당의 소재지를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, 산7번지에서 지번 분할로 인하여 산6-1, 산7-1번지로 개정.

3. 참고사항 :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

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효친관”을 “송조당” 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”을 “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” 으로 하며, “효친관”을 “송조당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효친관”을 “송조당”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산 6, 산7”을 “산6-1, 산7-1”로 한다.

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 중 “효친관”을 “송조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조례명 : 구미시공설 <u>효친관</u> 설치및사용조례	조례명 : ----- <u>송조당</u> -----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존을 위한 구미시공설 <u>효친관</u> (납골당)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장사등에관</u> 한법률 제12조 제1항 ----- ----- ----- <u>송조당</u> ----- ----- -----,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<u>효친관</u> (납골당)의 명칭은 구미시공설 <u>효친관</u> (이하 “ <u>효친관</u> ”이라한다) 이라한다. ② <u>효친관</u> (납골당)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, 산7 번지에 둔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<u>송조당</u> ----- ----- <u>송조당</u> (--“ <u>송조당</u> ” --) -----, ② <u>송조당</u> ----- -----산6-1, 산7-1 -----,
제3조(관리 등) <u>효친관</u> (납골당)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	제3조(관리 등) <u>송조당</u> ----- -----, -----,
제4조(시설기준) <u>효친관</u> (납골당)에는 일반실, 무연고실, 외국인실을 따로 둘수있다.	제4조(시설기준) <u>송조당</u> ----- ----- -----
제5조(유골의 안치) ① <u>효친관</u> (납골당)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(생략)	제5조(유골의 안치) ① <u>송조당</u> ----- ----- -----,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 (무연고자 유골등) 구미시 관내의 기존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은 <u>효친관</u> (납골당)에 안치시킬 수 있다.	제7조 (무연고자 유골등) ----- ----- <u>송조당</u> -----,

현행	개정안
제10조(사용료 등) ① <u>효친관(납골당)</u> 사용자는 【별표】에서 정하는 사용료등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한다. 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<u>효친관(납골당)</u>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.	제10조(사용료 등) ① <u>승조당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승조당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2조 (개장승인) <u>효친관(납골당)</u>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 할 때에는 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한다)은 개장을 승인하여야한다. 이때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	제12조 (개장승인) <u>승조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3조(금지행위 등) <u>효친관(납골당)</u>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~5.(생략)	제13조(금지행위 등) <u>승조당</u> ----- ----- ----- 1.~5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원상복구 및 변상) <u>효친관(납골당)</u>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<u>효친관(납골당)</u>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	제14조(원상복구 및 변상) <u>승조당</u> ----- ----- <u>승조당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